

## 오픈뱅킹서비스 이용약관

2019. 10. 30 제정

###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주) 하나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이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오픈뱅킹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이용과 관련하여 은행과 사용자 간의 권리 및 의무, 책임사항, 서비스 이용조건, 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비스”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오픈뱅킹서비스를 총칭합니다.
2. “사용자”란 본 약관에 의하여 은행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을 말합니다.
3. “지급인”이란 “출금계좌”의 명의인을 말합니다.
4. “수취인”이란 “입금계좌”의 명의인을 말합니다.
5. “출금계좌”란 “서비스” 이용을 위해 연결하는 계좌로서 자금 출금이 가능한 예금계좌를 말합니다.
6. “입금계좌”란 “서비스”를 이용하여 자금이 입금되는 예금계좌를 말합니다.
7. “추심이체”라 함은 “수취인”의 전자적 장치를 통한 추심지시에 따라 은행이 “지급인”의 “출금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같은 은행 또는 다른 은행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8. “운영기관”이란 오픈뱅킹공동업무 중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금융결제원을 말합니다.
9. “오픈뱅킹공동업무”란 은행이 다른 은행과 별도 제휴없이 “운영기관”을 통하여 표준화된 오픈 API 형태로 운영·제공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 가. “출금이체업무”란 은행의 출금에 동의한 “이용자”的 “출금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은행의 수납계정 또는 계좌로 실시간 입금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 나. “입금이체업무”란 은행의 지급계정 또는 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수취인”的 계좌로 실시간 입금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 다. “잔액조회업무”란 “이용자”가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본인계좌의 잔액을 실시간 조회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라. “거래내역조회업무”란 “이용자”가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본인계좌의 거래내역을 실시간으로 조회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마. “계좌실명조회업무”란 은행이 “수취인” 또는 출금이체 신청을 한 “이용자” 계좌의 정상여부 및 실명을 실시간으로 조회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② 본 약관에서 별도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등 관계 법령과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는 일반 상관례에 따릅니다.

### 제 3 조 (서비스의 종류)

① 은행은 “사용자”에게 오픈뱅킹공동업무를 통해 “조회”와 “이체”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1. 조회 서비스 : 사용자가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사전에 등록한 본인계좌에 대한 잔액 및 거래내역을 실시간 조회하는 서비스

2. 이체 서비스(출금이체업무 및 입금이체업무) : 사용자의 출금에 동의한 출금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전자적 장치를 통한 지시에 따라 특정 계좌 등으로 실시간 입금하는 서비스

② 은행은 서비스 별 거래 가능한 계좌 등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홈페이지에 안내합니다.

### 제 4 조 (서비스의 제공)

① 제 7 조에 따라 은행이 “가입신청자”의 이용신청을 승낙함과 동시에 “가입신청자”는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사용자”가 되며, 이때부터 은행은 “사용자”에게 본 약관이 정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② 은행은 본 약관이 정한 “서비스” 외에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자”에게 별도의 추가적인 약관 동의, 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등 절차의 이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절차가 완료되지 않는 경우 “사용자”는 추가적인 “서비스”的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제 5 조 (이체대상 및 출금한도)

① 이체 서비스의 이체대상은 현금으로 합니다.

② “사용자”的 전 은행에 개설된 계좌를 통합한 이체 서비스의 일일 이용한도는 “운영기관”에서 정하는 한도로 합니다.

③ 한도대출이 약정되어 있는 경우 등 출금계좌의 출금가능금액이 이체 요청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거래가 제한됩니다.

## 제 6 조 (출금계좌 지정 동의 및 철회)

- ① “사용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은행이 제공하는 방식과 요건에 의한 전자서명으로 출금계좌의 출금 동의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② “사용자”는 은행의 거래지시에 따라 “사용자”의 계좌 원장에 출금기록이 기입되기 전까지는 은행에 대하여 전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에 대한 철회의 의사표시 이전에 발생한 출금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③ “사용자”는 서비스에 등록된 출금계좌를 삭제하는 방법으로 전 2 항의 출금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제 7 조 (이용계약의 체결)

- ① 은행과 “사용자” 사이의 서비스 이용계약(이하 “이용계약”이라 함)은 “사용자”가 되고자 하는 자(이하 “가입신청자”라 함)가 은행이 정한 양식에 따라 가입신청을 하고 은행이 이에 대해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
- ② “가입신청자”가 동의 의사를 은행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하게 되면 본 약관에 동의하고 은행에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 ③ 은행은 “가입신청자”的 가입신청이 제 11 조 제 2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④ 은행은 “가입신청자”的 가입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확인된 경우 이를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사용자가 과거에 본 약관을 위반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당한 경우
  2. 만 14 세 미만의 자가 이용 신청하는 경우

## 제 8 조 (인증)

- ① “사용자”는 본 약관의 적용대상인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경우 반드시 은행이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성격, 위험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한 인증방법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② “서비스” 이용을 위한 인증방법은 PIN 인증, 휴대폰인증 등(이하 “본인 인증수단”이라 한다) 은행이 정한 방법에 의합니다.

## 제 9 조 (사용자에 대한 통지)

- ① 은행이 “사용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본 약관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的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 ② 은행은 “사용자” 전체에 대하여 통지하는 경우 이를 은행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제 10 조 (사용자 정보의 제공 및 변경)

- ① 은행은 이용계약 체결 이후 필요한 경우 “사용자”的 동의를 받아 “사용자”的 정보를 추가적으로 수집할 수 있습니다.
- ② “사용자”는 은행에 제공한 고객정보에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온라인으로 수정하거나 고객센터를 통해 은행에 알려야 하며, 신고사항의 변경은 은행이 신고를 접수하고 전산입력에 요구되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난 후에 그 효력이 생깁니다. 만약 이를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에 따릅니다.

#### 제 11 조 (이용계약의 해지)

- ① “사용자”는 언제든지 이용계약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은행은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 ② 은행은 “사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확인된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사용자가 서비스 이용정지 기간 중에 이용계약을 임의로 해지하고 재이용신청 하는 경우
  2. 타인의 정보를 이용한 가입신청을 하는 경우
  3.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은행이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4. 가입신청자의 기타 제반 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5. 사용자가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방해하거나 시도하는 경우
  6. 이미 가입된 고객이 중복하여 가입신청 하는 경우
  7. 다른 사용자의 권리나 명예, 신용 기타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거나 대한민국 법령 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8. 기타 본 약관에 위배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한 이용신청임이 확인된 경우
- ③ 은행은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해지 사유를 밝혀 해지의사를 통지하며, “사용자”는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약관 및 운영정책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이의 신청 기간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제 12 조 (서비스의 중단)

① “서비스”의 이용은 은행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 일 24 시간 제공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운영기관”과 “은행”의 시스템 점검시간
  2. “서비스” 운영상의 필요
  3.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증설, 교체, 이전 등 시스템 관리 업무
  4. 정전, 제반 설비의 장애 또는 이용량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5. 기타 천재지변, 전쟁, 폭동, 테러, 해킹, DDOS,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6. 회사가 정한 서비스 제공환경이 아니거나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 ② 제 1 항에 따라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경우 은행은 사전에 서비스 중단을 공지합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사전 공지를 할 수 없는 경우 은행은 이를 사후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
- ③ “서비스”는 관련 법령, 정책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은행은 “서비스”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的 전체 또는 일부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서비스”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 1개월 전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합니다.

## 제 13 조 (수수료)

- ① 은행은 사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② 은행은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③ 은행은 수수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 1개월 전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합니다.

## 제 14 조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서비스”的 이용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 약관, 세부이용지침, 서비스 이용안내 및 은행이 통지한 공지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안전한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1.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시스템에 접근하는 행위
2. 타인의 명의, 휴대폰 정보, 계좌 정보 등을 도용하여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3.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법령에 의하여 금지된 방법으로 비정상적인 결제를 하는 행위
  4. 은행이 게시한 정보의 무단 변경 또는 은행이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하는 행위
  5. 은행 및 기타 제 3 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행위
  6. 은행 및 기타 제 3 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은행의 정보를 은행의 사전 동의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8. “서비스”와 관련된 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 및 혼란을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 자료를 등록 또는 유포하는 행위
  9. 은행의 “서비스”를 해킹하거나 해킹에 이용하는 일체의 행위
  10. 구매의사 없이 반복적인 결제를 발생시키는 행위
  11. 접근매체의 대여나 양도·양수 등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12. 자신의 “모바일기기”를 제 3 자가 사용하도록 하는 행위
  13.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 ②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은행에 통보해야 합니다.
1. 자신의 명의가 도용되거나 제 3 자에게 부정하게 사용된 것을 인지한 경우
  2. 서비스를 이용 중인 “모바일기기” 및 USIM 칩 등의 분실, 도난
  3. 비밀번호, PIN 번호 등의 누설
  4. 접근매체의 훼손, 도난, 분실, 위조 또는 변조의 사실을 알았거나 기타 거래절차상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누설되었음을 알게된 경우
- ③ 은행은 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的 “서비스” 전부 또는 일부 이용을 정지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④ 은행은 “서비스”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고객정보를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다른 사람에게 제공 및 누설하는 등의 업무 목적외 사용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관리소홀로 인한 사용자 관련 정보 도난 및 유출이 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 ⑤ 사용자가 송금금액, 수취은행, 수취인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하여 송금(이하 “착오송금”이라 합니다)하였음을 은행에게 통지하는 경우 은행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을 준용하여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 ⑥ 은행은 통신장애 및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거래 지시된 이체거래가 처리 불가능할 경우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이체 금액을 반환합니다. 은행은 사용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사고 또는

장애의 사유를 지체 없이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제 15 조 (면책)

은행은 본 서비스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동의에 의한 거래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은행은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귀책 사유가 있을 경우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합니다.

### 제 16 조 (약관의 변경)

- ① 은행은 본 약관의 내용을 “사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화면에 게시합니다.
- ② 은행은 관계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과 관련된 사항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의 내용을 준용합니다.

### 제 17 조 (약관적용의 우선순위)

- ① 은행은 개별 “서비스”에 적용될 사항의 규정을 위해 개별약관을 사용하거나 이용정책을 구분하여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이 본 약관과 상충되는 경우 개별 “서비스”에 대한 개별약관 및 이용정책이 우선합니다.
- ②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금융결제원의 『오픈뱅킹 공동업무규약』 및 『오픈뱅킹 공동업무규약 시행세칙』과 관련 법령이 우선 적용됩니다.

### 제 18 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 ① 본 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률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 ② 본 약관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부 칙(2019. 10. 30)

본 약관은 2019. 10. 30 부터 시행합니다.